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6. . . (제 회)	

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농림축산식품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6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농어업재해보험법」 개정에 따라 농어업재해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
의 내용·시기 방법 등과 가격 공시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, 이상재해 발생
시 예외적 할증 제외 기준을 제시하려는 것임.

또한 재해보험사업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과태료 가중·감경 사유를 분
리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함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를 제2조의2로 하고,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조(실태조사의 내용 등) ① 「농어업재해보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의3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.

1. 농어업재해의 발생 빈도
2. 농어업재해의 피해 정도
3. 그 밖에 농어업재해 현황 파악에 필요한 사항

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실시 주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

1. 정기조사: 5년마다 실시
2. 수시조사: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·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

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농어업재해 관련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·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제2조의2(중전의 제2조)제1항 중 “「농어업재해보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

한다) 제3조”를 “법 제3조”로 한다.

제6조 중 “제2조”를 “제2조의2”로 한다.

제11조(변경사항의 공고) “법 제9조제2항”을 “제9조제3항”으로 한다.

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1조의2(보험료율의 산정 등) ① 법 제9조제2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”란 강풍, 폭설, 집중호우 등 별표1에 따른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의 범위·정도가 지역(권역)별·품목별 상위 90분위에 해당하는 값을 의미한다.

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피해의 범위·정도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.

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0조의2(가격의 공시 등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할 수 있다.

1. 보험상품별 기준가격(적용가격)
2. 보험상품별 수확기가격
3. 그 밖에 보험상품에 적용하는 가격의 조사·산정에 필요한 사항

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또는 보험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할 수 있다.

별표 3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가. 농림축산식품부장관,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는 다음의
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.

- 1) 위반의 내용·정도가 중대하여 농어민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
- 2)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가 아닌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3)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
- 4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나. 농림축산식품부장관,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감경을 하지 아니한다.

- 1) 위반행위자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」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- 2) 위반행위가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3) 위반행위자가 위법 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
- 4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별표 3 제2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라. 재보험사업자의 발기인, 설립위원, 임원, 집행간부, 일반간부직원, 파산관재인 및 청산인이 법제18조제1항에서 적용하는 「보험업법」 제 120조에 따른 책임준비금 또는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(計上)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따라 작성한 장부에 각각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6년 8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신 설>	제2조(실태조사의 내용 등) ① 「농어업재해보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의3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. 1. 농어업재해의 발생 빈도 2. 농어업재해의 피해 정도 3. 그 밖에 농어업재해 현황 파악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실시 주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 1. 정기조사: 5년마다 실시 2. 수시조사: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·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농어업재해 관련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·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제2조(위원장의 직무) ① 「농어업재해보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조에 따른 농업재해보험심의회(이하 “심의회”라 한다)의 위원장(이하 “위원장”이라 한다)은 심의회를 대표하며,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	제2조의2(위원장의 직무) ① 법 제3조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3조 ~ 제5조 (생략)	제3조 ~ 제5조 (현행과 같음)
제6조(운영세칙) 제2조, 제3조, 제3조의2, 제4조 및 제5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	제6조(운영세칙) 제2조의2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제8조 ~ 제10조 (생략)	제8조 ~ 제10조 (현행과 같음)
제11조(변경사항의 공고) 법 제9조제2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이 예정된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	제11조(변경사항의 공고) 법 제9조제3항에서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3. (생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
<신 설>	제11조의2(보험료율의 산정 등) ① <u>법 제9조제2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”란 강풍, 폭설, 집중호우 등 별표1에 따른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의 범위·정도가 지역(권역)별·품목별 상위 90분위에 해당하는 값을 의미한다.</u> ② <u>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피해의 범위·정도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.</u>	제21조 ~ 제23조 (생 략) 별표3(과태료의 부과기준) 1. 일반기준 <u>농림축산식품부장관,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횟수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개별기준에 따른 해당 과태료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. 다만,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.</u>	제21조 ~ 제23조 (현행과 같음) 별표3(과태료의 부과기준) 1. 일반기준 가. <u>농림축산식품부장관,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.</u> 1) <u>위반의 내용·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</u> 2) <u>위반 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가 아닌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</u> 3) <u>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</u> 4) <u>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</u> 나. <u>농림축산식품부장관,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</u>
제12조 ~ 제20조 (생 략) <신 설>	제12조 ~ 제20조 (현행과 같음) 제20조의2(가격의 공시 등) ① <u>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할 수 있다.</u> 1. <u>보험상품별 기준가격(적용가격)</u> 2. <u>보험상품별 수확기가격</u> 3. <u>그 밖에 보험상품에 적용하는 가격의 조사·산정에 필요한 사항</u> ② <u>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또는 보험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할 수 있다.</u>		

	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감경을 하지 아니한다. 1) 위반행위자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」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) 위반행위가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)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4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	마. ~ 사. (생략) 마. ~ 사. (현행과 같음)
2. 개별기준 가. ~ 다. (생략) 라. 재해보험사업자의 발기인, 설립위원, 임원, 집행간부, 일반간부직원, 파산관재인 및 청산인이 법 제18조제1항에서 적용하는 「보험업법」 제120조에 따른 책임준비금 또는 비상위험준비금을 <u>계상하지</u> 아니하거나 이를 따로 작성한 장부에 각각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	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 라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계상(計上)하지</u> ----- ----- -----	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보험과	
연 락 처	(044) 201 - 2837